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 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음주 또는 약물을 투여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408호, 2026. 2.27 공포,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압류등록 부기 처리, 음주·약물 후 조종 시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차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검사중에 대여사업자의 상호와 구조변경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기술인력 진입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국무조정실 사전규제검토 완료(2026. 7. 14.)
3) 입법예고(2026. 8. .~ 9.) 예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압류등록)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②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 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제9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별표 9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보 유
1) 책임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건설기계설비·농업기계·자동차정비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계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검사원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2) 검사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건설기계설비·농업기계·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이상에서 기계분야를 전공한 후 건설기계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실무경력이 5년”을 “실무경력이 3년”으로 하고,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을 “2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63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 개별기준 중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1)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3)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4)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 제28조제7호	면허효력정지 60일 취소 취소 취소
아.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 제28조제8호	취소
자. 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법 제28조제9호	취소
차.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법 제28조제10호	취소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발급번호: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등 록 사 항	건 설 기 계 의 표 시		
	건설기계명		등 록 번 호
	형 식		규 격
	원동기형식		차대일련번호
	상 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소 유 자 의 표 시		
성 명 (법인명)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 1.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
 2.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상호(명칭)란에는 대여사업자의 상호(명칭)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대여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주 요 제 원			
형식승인번호 :			
길 이	mm	너 비	mm
높 이	mm	총 중 량	kg
주행방식		정격출력	PS/RPM
기 통 수	기통	연료종류	
2. 저 당 권 등 록 사 실			
구분(설정 또는 말소)		일자	

*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작 업 장 치 ※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padding: 5px;">최고속도 (90km/h) 제한장치</td> <td style="width: 40%; padding: 5px;">설치 ()</td> </tr> <tr> <td style="padding: 5px;">대형건설기계 표시</td> <td style="padding: 5px;">설치 ()</td> </tr> </table> ※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해야 합니다.	최고속도 (90km/h) 제한장치	설치 ()	대형건설기계 표시	설치 ()	
최고속도 (90km/h) 제한장치	설치 ()				
대형건설기계 표시	설치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등록번호 :)

시 · 도 지 사

[illegible]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건설기계명	전분기말	금분기발급	금분기처분		금분기말
			취소	정지	
1. 불도저					
2. 굴착기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 3톤 미만의 굴착기					
21. 3톤 미만의 로더					
계					

끝.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신설> 4.~19. (생략) ② (생략)	제10조의3(압류등록)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②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95조(전산처리업무) ① ----- ----- ----- ----- -----. 1.~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4.~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